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72

발의연월일: 2020. 7. 6.

발 의 자: 송갑석·인재근·서삼석

조정식 · 조오섭 · 이장섭

민형배 · 안민석 · 권칠승

이동주・정춘숙 의원

(11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공공임대주택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정부의 각종 주거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출퇴근, 높은 전·월세비용부담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복지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.

특히 취업준비생들이 다른 지역으로의 취업 시 가장 부담스러운 점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손꼽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인력 난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거복지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임.

이미 여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숙사를 건설하 거나 사택을 매입 후 임대하는 등의 주거 지원을 하고 있으나, 종업원 용 주거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세제 지원특례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

한 취득세를 2022년 말까지 면제함으로써, 중소기업의 근로자 주거복지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여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증대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감면)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 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
- 1. 무주택 종업원(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)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
- 2. 종업원용 기숙사
- ② 제1항에 따른 면제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- 2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2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	레이드 카이(그그리 즈키버키치셔
<u>&lt;</u> 신 설>	제25조의2(근로자 주거복지시설 이 대한 감면) ①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1. 무주택 종업원(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)에게 임대하기위한 국민주택 2. 종업원용 기숙사 ② 제1항에 따른 면제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 1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때

<u>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</u> <u>사용하는 경우</u>